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4. 28 선고 2020가단2007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8. 17 선고 2021나68162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4. 28 선고 2020가단200718 판결

전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

담당변호사 윤아련

변 론 종 결 2021. 3. 17.

판 결 선 고 2021. 4. 28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지분에 관하여 2019. 1. 20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3. 14. 접수 제137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68896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10. 13. ‘C은 원고에게 49,135,773원 및 그 중 11,599,000원에 대하여 2016. 5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6. 12. 7. 확정되었다.

나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

1)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인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19. 1. 20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, C, E, F, G이 있다.

2) 위 상속인들은 2019. 1. 20.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3. 14. 접수 제137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C의 무자력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.

【인정 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, 광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, 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/5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나. 먼저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망인은 2017. 5. 30.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,000,000원, 기간 2017. 5. 30.부터 2019. 5. 30.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, H은 2019. 1. 7.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, 2019. 1. 20.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132,0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상속재산분할협이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을 공제한 92,000,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나아가 을 제1, 4 내지 8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1993. 4.경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부양하였고, 약 4년간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망인의 병원비를 상당부분 부담하였던 사실, 피고는 2014. 4.경 86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사실, 이에 C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하여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, 상속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

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,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에서 C이 자신의 상속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도록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(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, 피고로서는 C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,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)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범선윤

별지